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폐지>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폐지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제1항 후단 삭제).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12개월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 1. ~ 4. (생략) ② (생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 ----- ----- . <u><후단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20년 1월 법률 제16867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현행법 제91조제1항제1호¹⁾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다가 그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이면서,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1. 공포 2020. 7. 1. 시행)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u>지역가입자</u>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신 설> <신 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u>지역가입자</u>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2. (좌 동)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 개정안은 현행 12개월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이력 공백과 이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성 악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 제100조의4제2항³⁾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정하면서 지원기간의 상한을 함께 규정하거나 개별 지역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00조의3⁴⁾에서는 제100조의4제1항 후단과 달리 지원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3)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 및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서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3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⁵⁾

□ 둘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지원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분담하게 하는 조치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상한 자체가 폐지되어 그 지원이 한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행법 제100조의3⁶⁾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36개월)⁷⁾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현행 12개월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은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상한(36개월)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게 될 경우 역방향의 형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초기이므로, 경과 모니터링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